

#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세범처벌법 제3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관세법 제270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18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부정당업자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 (인)  
서약자(책임자) : (인)